



함께 꿈꾸며  
배움이 삶이 되는 교육

# 이리남교육통신

[새학기 코로나19 감염예방]

제2023-20호

교무실: 063-851-1413  
행정실: 063-843-1060

##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수칙 변경 안내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기본 대책(제9-1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23. 3. 20.(월)부터 학교 방역관리도 변경되어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제9판	제9-1판
마스크 착용	<p><b>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b></p> <p>*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p>	<p><b>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b></p> <p>*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p>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치, 예방 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적용 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적용 시기】** '23.3.20.~**별도 개정 시까지**

※ 감염 상황 및 방역 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 II

## 학교 일상관리

### [마스크 착용] 학교 실내·외 모두 착용 의무 해제, 일부 상황에 한하여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방역 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학원 적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합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호흡기질환, 어떻게 예방할 건강!?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기침 후엔 비누로 손씻기

• 기침예절 실천 네 가지 수칙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올바른 기침예절 생활화로 안전한 일상 회복에 함께해 주세요!